

공백 없는 필수의료, 따뜻한 공공의료, 함께 하는 의료원

2024년도 인권리스크 모의훈련 결과보고

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
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

2024년도 인권리스크 모의훈련 결과보고

- ◆ 인권리스크 모의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처리과정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여 향후 환류방안으로 적용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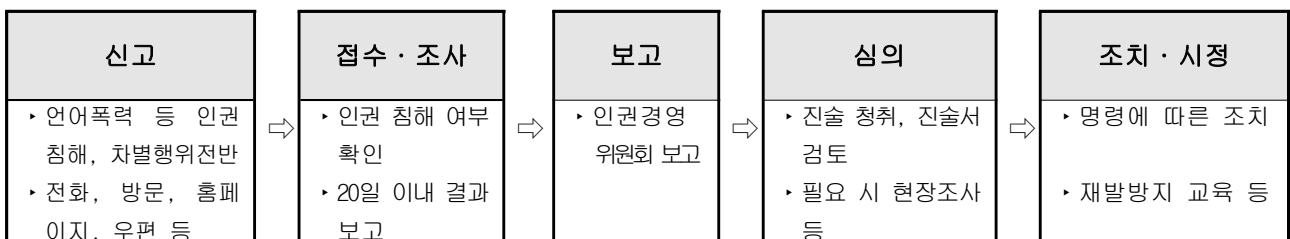
□ 관련근거

-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: 기획계-601(2024.03.21.)호

II 추진개요

□ 평가개요

- 점검일시 : 2024.09.27.(금)~09.30.(월)
- 점검분야 : 평가이슈 중 인권침해 발생요인 가상설정을 통한
구제절차 전 과정의 점검 훈련
- 다량발생위험 지표 선정 : 소비자 인권보호 분야
- 점검과정



III 추진실적

□ 모의훈련 결과 분석

< 모의훈련 점검사항 >

- ◆ 모의훈련 시, 각 단계별 맞는 상황 설정
- ◆ 훈련 점검표 작성 및 프로세스 흐름에 따른 항목 점검

구분	점검 내역		비고
	과정별 이행 및 점검 사항	담당	
인권침해요인 발생 및 신고	▸ 가상 상황 발생에 따른 신고접수	당사자 (인지자)	
	▸ 당사자 혹은 인지자가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	당사자 (인지자)	별지 제1호 서식
	▸ 인권침해 사실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	당사자 (인지자)	별지 제2호 서식
접수 및 조사	▸ 신고 된 내용의 보강조사 및 위원회 상정 여부 - 인권침해행위 해당 여부 검토사항 · 신고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·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 혹은 이유 없음 이 인정된 경우 ·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·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(단, 원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, 위원회 결정에 따름) ·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, 수사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·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·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·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한 경우	인권경영 책임관 (관리부장)	보강조사 결정 시 관련 부서장, 업무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
	▸ 위 검토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, 사건 상정 ▸ 검토 시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경우 민원으로 접수		
보고 및 심의	▸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15일 이내 심의 (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연장 가능)	인권경영 위원회	
조치·시정	▸ '별지 제3호 서식'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작성 및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, 원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▸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,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	인권경영 위원회	

- 신고인의 신분보장 : 직무관련자의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
-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·처리 하지 않는 것을 원칙
- 인권경영책임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 접수·처리 가능

- 인권침해 발생부터 조치 및 시정 까지 전 과정의 문제점 없음
- 시행방법 : 가상 인권리스크 발생 설정, 과정별 전반적 점검
- 점검분야 : 평가이슈 중 인권침해 발생요인 가상설정
 - 이슈별 소관부서 지표(7개 분야, 81개 지표) 중 다량발생위험 지표 선정
 - 인권경영체제의 구축,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, 강제노동의 금지, 산업안전보장,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, 소비자 인권보호 등

□ 모의훈련 방식

- 가상훈련용 작성서류 검토
 - 가상훈련 인권경영위원회 관련서류(상정안건, 의사록, 집계표 등)
 - 가상훈련 접수서류(접수대장, 인권침해 신고서 등)
 - 훈련 시 관련 서류 붙임 참조
- 가상훈련용 인권침해 발생요인 설정
 - 사회 전반적으로 민감한 인권침해 발생요인인 개인정보관련 지표
- 가상 설정에 따른 인권침해요인 처리 절차 및 방안 점검
 - 처리 과정 중 절차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여부 점검
 - 조치·시정의 적절성 검토

□ 결과보고서 작성

- 훈련방식에 따른 처리과정의 문제점 여부 점검
- 처리과정 중 문제점·보완점 유무 점검
- 가상 설정한 인권침해요인의 해결방안 도출
 - 전문가(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)의 자문을 통한 조치사항 작성

IV 행정사항

□ 행정사항

- 모의훈련 실시 : '24.09.27.(금)
- 점검사항 반영여부 확인 : '24.09.27.(금)
- 모의훈련 결과 보고 : '24.09.30.(월)

- 붙임 1. (모의훈련) 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대장
2. (모의훈련) 인권침해 신고서
3.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. 끝.

[별지 제2호 서식]

인권침해 접수 및 처리대장(제29조제1항 관련)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고인		피신고인(신고대상) 및 인권침해 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인	
		성명	소속부서				상담원	부서장
				■ 피신고인 - 성명 : - 소속 : - 직급 : ■ 내용				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4.3.4.>

인권침해 신고서(제28조제1항 관련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
신고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
	주소(소재지)	사업자(법인·단체) 등록번호
	전화번호 팩스번호	전자우편주소
인권침해 내용	피해일자 및 장소	
	피해자	
	피해내용	

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「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
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귀하

접 수 증

접수번호	신고인 성명	(서명 또는 인)
접수부서	접수자 성명	(서명 또는 인)

귀하의 신고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

20 년 월 일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(직인)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24.3.4.>

인권침해 심의 결정서(제30조제1항 관련)

심의 및 결정일 : 20 년 월 일

제 회(정기, 임시)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.

건명	
결정내용	

20 년 월 일
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(서명 또는 인)